

의안번호	2213767
의 퇴 인	최기상 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계번호	25G5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액감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2026년 554억원 등 2026~2035년 10년간 총 21조 2,663억 원(연평균 2조 1,26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1년 총 839억원(연평균 168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3년 총 15조 9,259억원(연평균 2조 2,608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5년 총 1,014억원(연평균 113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5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7~2031년 총 2,143억원(연평균 4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는 2027~2031년 총 4조 6,523억원(연평균 9,3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 수는 2026~2030년 총 2,884억원(연평균 5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	-157.1	-162.2	-167.6	-173.2	-179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8)	-	-10,815.6	-21,555.5	-31,727.2	-31,848.9	-31,97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	-47.3	-96.4	-145.2	-176.3	-210.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	-429	-429	-429	-429	-42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	-7,562	-8,461	-9,450	-10,149	-10,901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554	-565	-576	-588	-600	-
합계	-554	-19,576	-31,280	-42,507	-43,376	-43,69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	-	-	-	-839.1	-167.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8)	-21,087.1	-10,253.4	-	-	-159,259	-22,608.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157.6	-103	-50.8	-26.5	-1,013.7	-11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	-	-	-	-2,143	-42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	-	-	-	-46,523	-9,305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	-	-	-	-2,884	-577
합계	-21,245	-10,356	-51	-27	-212,663	-21,266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2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3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4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5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개정안) 비과세종합저축에 <u>2030년 12월 31일까지</u>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	안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제4호6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을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2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
3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4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5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
6	안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제4호6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이 향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세액공제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상시근로자) 2023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의 기업규모·지역·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계속하여 감면받는다 가정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21~202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4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 산출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육아휴직 복귀자)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이 향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의 경우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과세연도 공제액을 추정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 따라서 2026~2030년의 신규 인증기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7~2035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7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8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9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30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근 5년('20~'24)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1기업당 감면액은 2024년 신고기준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향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연차별로 유지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2031년 발생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다고 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최근 조세지출 실적과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2~2025년 조세지출액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 과거 실적 고려시 납입액 한도 인상 효과를 반영함
 - －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효과를 고려
- 2025년부터 동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 해당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에 따른 일몰연장 기간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 (약 12개월)을 고려하여 2027~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을 고려하여 계좌 가입과 금융소득 지급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이에 1년의 시차가 있다고 전제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치에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 변화와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는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7.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5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한도금액은 3,3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장금리 전망은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활용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율에 따라 최종 조세지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세수효과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비 자료를 활용하며, ‘수선유지용역비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영구임대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유지용역비가 다르게 발생할 것이나, 2024년 현재 영구임대주택 재고가 없는 연차의 경우 수선유지용역비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추계에서는 2024년 전체 수선유지용역비 규모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수효과를 전체(지자체 관리 주택 포함)로 환산함¹⁾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주택과 지자체 관리 주택 간 주택 수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수선유지용역비 규모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급하고 있는 주택 유형별·경과연수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 신설 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전체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발생한 경우는 기업 규모별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개정연혁)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12.23. 신설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됨

- 2015.12.15. 일부개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2016.12.20.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7.12.19.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 20%로 상향조정
- 2020.12.29. 일부개정: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대상을 제한

□ (감면실적) 2020~2024년 신고기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109.1억 원에서 2023년 226.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143.3억 원으로 감소하여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움

[표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36.1	42.5	53.4	66.9	44.1
법인세	중소기업	47.6	38.2	52.9	102.6	92.3
	중견기업	25.4	31.5	55.0	57.4	6.9
	소계	73.0	69.7.0	107.9	160	99.2
합계		109.1	112.2	161.3	226.9	14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은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이 향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3.2~3.3%²⁾ 수준으로, 귀속연도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화한다고 가정

[표 4]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8.4	50.0	51.7	53.4	55.2
법인세	중소기업	101.2	104.5	107.9	111.5	115.2
	중견기업	7.5	7.7	8.0	8.3	8.6
합계		157.1	162.2	167.6	173.2	179.0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57.1억 원, 2031년 179.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39.1억 원(연평균 167.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157.1	162.2	167.6	173.2	179.0	839.1	167.8

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

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표 6]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 원)

			舊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소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수도권 내	1,000	1,100	1,100	1,100	1,100	1,450	1,450
		수도권 밖	1,100	1,200	1,200	1,200	1,300	1,550	1,550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700	700	700	700	700	850	850
		수도권 밖	770	770	770	770	770	950	950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중 견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800	800	800	800	800	800
		수도권 밖	-	-	-	900	900	-	-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대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3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도권 밖	-	-	-	500	5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	-	-	-	-	-	-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 (공제액 실적)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고기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감소
-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표 7]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액: 2020~2024년

(단위: 억 원)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소득세		4,283	6,336	8,898	11,191	9,559	4,720
법인세	중소기업	6,212	9,002	11,950	14,027	11,039	4,649
	중견기업	1,300	1,491	2,061	2,396	1,659	542
	대기업	1,017	1,131	1,257	1,725	846	600
	소계	8,529	11,624	15,268	18,148	13,544	5,791
합계		12,812	17,960	24,166	29,339	23,102	10,511

주: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 2024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을 수도권과 지방, 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한 후,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2023.1.1.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으로 가정
 - 가령 2026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과 2025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6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 2024.12.31.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신청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 구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실적은 2023년 2조 9,339억 원 발생하였으나 2024년 2조 3,102억 원으로 감소
 - 구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감면액이 훨씬 크므로

-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액이 없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
- 다년간 공제되는 구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특성상 향후에도 감면실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추계함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6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₆	A ₂₆	A ₂₆				
	대기업	B ₂₆	B ₂₆					
'27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₇	A ₂₇	A ₂₇			
	대기업		B ₂₇	B ₂₇				
'28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₈	A ₂₈	A ₂₈		
	대기업			B ₂₈	B ₂₈			
'29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₉	A ₂₉	A ₂₉	
	대기업				B ₂₉	B ₂₉		
'30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₃₀	A ₃₀	A ₃₀
	대기업					B ₃₀	B ₃₀	
합계		A ₂₆ +B ₂₆	A ₂₆ +B ₂₆ +A ₂₇ +B ₂₇	A ₂₆ +A ₂₇ +B ₂₇ +A ₂₈ +B ₂₈	A ₂₇ +A ₂₈ +A ₂₈ +A ₂₉ +B ₂₉	A ₂₈ +A ₂₉ +B ₂₉ +A ₃₀ +B ₃₀	A ₂₉ +A ₃₀ +B ₃₀	A ₃₀

주: 1) 2024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3년 과세연도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액
 2) A는 중소·중견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아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 향후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발생하고,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신고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신고연도를 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까지, 대기업은 2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총 1조 511억 원

-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법인세 5,791억 원, 소득세 4,720억 원으로 총 1조 511억 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공제액 자료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유형별 구분되지 않으며, 지역별 구분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구분되지 않음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소득세 공제액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구분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구분은 2021~2023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수도권 비중('21~'23년 평균, %): 중소기업 68.9 중견 및 대기업 70.7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³⁾

[표 9] 2024년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

(단위: 억 원, %)

'24년 통합고용세액 공제액 등(A)			지역별(B)	근로자 유형별		'24년 공제액 안분 (D=A×B×C)
				구분	비중(C)	
법인세	중소기업	4,649.0	수도권	청년 등	52.8	1,554.5
				일반	47.2	1,388.5
			비수도권	청년 등	52.8	901.1
				일반	47.2	804.9
	중견기업	541.9	수도권	청년 등	59.9	229.8
				일반	40.1	153.6
			비수도권	청년 등	59.9	95.0
				일반	40.1	63.5
	대기업	600.0	수도권	청년 등	100	424.5
			비수도권	청년 등	100	175.5
	소계	5,790.9	5,790.9			
소득세	중소기업	4,720.3	수도권	청년 등	52.8	1,399.7
				일반	47.2	1,250.3
			비수도권	청년 등	52.8	1,093.5
				일반	47.2	976.8
	소계	4,720.3	4,720.3			
합계		10,511.2	10,511.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년 1조 702.3억 원에서 2031년 1조 874.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3)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30년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2031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은 0.4~0.6%⁴⁾ 수준으로, 공제액은 귀속연도 기준 취업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10] 신고연도 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805.7	4,825.0	4,844.3	4,863.6	4,883.1
법인세	중소기업	4,733.1	4,752.1	4,771.2	4,790.3	4,809.4
	중견기업	552.1	554.3	556.5	558.7	560.9
	대기업	611.4	613.8	616.2	618.6	621.1
	소계	5,896.6	5,920.2	5,943.9	5,967.6	5,991.4
합계		10,702.3	10,745.2	10,788.2	10,831.2	10,874.5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조 702.3억 원, 2033년 1조 253.4억 원 등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에 포함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

[표 11] 신고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7~2033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7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090.9	10,090.9	10,090.9				
	대기업	611.4	611.4					
	소계	10,702.3	10,702.3	10,090.9				
2028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131.4	10,131.4	10,131.4			
	대기업		613.8	613.8				
	소계		10,745.2	10,745.2	10,131.4			
2029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172.0	10,172.0	10,172.0		
	대기업			616.2	616.2			
	소계			10,788.2	10,788.2	10,172.0		
2030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212.6	10,212.6	10,212.6	
	대기업				618.6	618.6		
	소계				10,831.2	10,831.2	10,212.6	
2031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253.4	10,253.4	10,253.4
	대기업					621.1	621.1	
	소계					10,874.5	10,874.5	10,253.4
합계		10,702.3	21,447.5	31,624.3	31,750.8	31,877.7	21,087.1	10,253.4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가)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
 - (개정연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12.24. 신설된 규정으로 2022.12.3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8.12.24.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2020.12.29. 일부개정: 2022.12.31.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 상향(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2.12.31. 일부개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현행규정)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 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감면실적은 130.8억 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22.12.31.까지 복직 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공제

[표 12]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3~2024년

(단위: 억 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	2024	2024
소득세		25.0	8.5	46.8
법인세	중소기업	27.1	12.9	45.0
	중견기업	24.4	0.4	39.0
	소계	51.5	13.3	84.0
합계		76.5	21.8	130.8

자료: 국세통계포털 및 국세청 제출자료

나) 추계방법

□ (세수효과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21~'23)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최근 3년('21~'23)간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은 △4.7%
- 고용노동부 자료는 종자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용 규모 기준과 차이가 상당⁵⁾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5) 김정우,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KLIPANEL 제24호(2023-03)』, 한국노동연구원, 2023.10.16.

[표 13]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2019~2023년

(단위: 개, %)

	복귀형태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업체	전체	496,873	516,236	515,710	436,191	463,305
	① 지속 근무	423,897	428,642	410,716	370,243	332,504
	② 단축 근무	14,650	13,408	14,652	19,860	36,006
	①+② 합계	438,547	442,050	425,368	390,103	368,510
전년대비 ①+② 합계 증감율		(0.80)	(△3.77)	(△8.29)	(△5.54)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각 연도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추계

[표 14]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0.5	38.6	36.8	35.1	33.5
법인세	중소기업	39.0	37.2	35.5	33.8	32.2
	중견기업	33.8	32.2	30.7	29.3	27.9
합계		113.3	108.0	102.9	98.1	93.5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815.6억 원, 2033년 1조 253.4억 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15조 9,258.9억 원(연평균 2조 2,751.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함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 공제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	제1항	10,702.3	21,447.5	31,624.3	31,750.8	31,877.7	21,087.1	10,253.4	158,743.1	22,677.6
	제5항	113.3	108.0	102.9	98.1	93.5	-	-	515.8	103.2
	합계	10,815.6	21,555.5	31,727.2	31,848.9	31,971.2	21,087.1	10,253.4	159,258.9	22,751.3

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7.12.31. 제정된 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 기한 및 감면율 변경,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08.12.26. 일부개정: 인증취소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text{감면 한도} = 1\text{억 원} + (\text{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천만 원})$$

○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4)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1.1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85.3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1.5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표 16]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68.9	84.3	75.5	75.6	70.0
소 득 세	2.2	1.0	1.2	0.7	1.5
합계	71.1	85.3	76.7	76.3	7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나)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2019년 391개에서 2024년 236개로 감소
 - 2019~2024년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연평균 감소율: 8.8%

[표 17]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사,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사회적기업 수 ¹⁾	391	429 (9.7)	500 (16.6)	428 (△14.4)	371 (△13.3)	236 (△36.4)	△8.8

주: 1) 사회적기업포털 조회 결과('25.1.31.기준) 법인 외 개인사업자 확인 불가

1. ()안은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30년 신규 사회적기업 수를 추계한 후,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 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사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84.0%
 -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사
 - 2024년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100%) 및 2023 사업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98.0%)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 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18]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사)

	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 사회적기업 수(A)	196	179	163	149	135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94	86	78	71	65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 2024.12.31. 기준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19]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사, %)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기업 수(A)	236	371	428	500	429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236	364	404	452	375
비중(B/A×100)	100	98.1	94.4	90.4	87.4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20]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사)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90	89	85	82	79				
2027년 인증		82	81	78	74	72			
2028년 인증			75	74	71	68	66		
2029년 인증				68	67	65	62	60	
2030년 인증					62	61	59	56	55

주: [표 18]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19]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4년 신고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11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11억 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합계(71.43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664개사)으로 나눈 값

[표 21] 개정안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9.7	9.5	9.2	4.4	4.2				
2027년 인증		8.9	8.7	8.3	4.0	3.9			
2028년 인증			8.1	7.9	7.6	3.6	3.5		
2029년 인증				7.4	7.2	6.9	3.3	3.2	
2030년 인증					6.7	6.6	6.3	3.0	2.9
합계	9.7	18.4	26.0	28.0	29.7	21.0	13.1	6.2	2.9

주: [표 20]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2010.12.27. 신설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감면 한도 = 1억 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현행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4)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2.0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74.7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6.0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표 22]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55.7	63.3	47.5	47.3	66.0
소 득 세	16.3	11.4	7.1	6.3	10.0
합계	72.0	74.7	54.6	53.6	7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나)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본점) 수는 2019년 82개사에서 2024년 143개사로 증가

－ 2019~2024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11.8%

[표 23]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사,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인증 표준사업장 수	82	97 (18.3)	119 (22.7)	94 (△21.0)	109 (16.0)	143 (31.2)	11.8

주: ()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27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사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84.0%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사

－ 2024년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87.4%) 및 2023 사업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86.8%)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24]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사)

	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A)	179	200	223	249	279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82	92	103	115	128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25]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사, %)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43	109	94	119	97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41	103	79	94	77
비중(B/A×100)	98.6	94.5	84.0	79.0	79.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26]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사)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81	78	69	65	65				
2027년 인증		91	87	77	73	73			
2028년 인증			101	97	86	81	82		
2029년 인증				113	109	97	91	91	
2030년 인증					127	121	108	101	102

주: [표 24]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25]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4년 신고연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46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46억 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합계(76.0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164개사)으로 나눈 값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37.6	36.0	32.0	15.1	15.1				
2027년 인증		42.0	40.3	35.8	16.8	16.9			
2028년 인증			46.9	45.0	40.0	18.8	18.9		
2029년 인증				52.4	50.3	44.7	21.0	21.1	
2030년 인증					58.7	56.2	50.0	23.5	23.6
합계	37.6	78.0	119.2	148.3	180.9	136.6	89.9	44.6	23.6

주: [표 26]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47.3억 원, 2035년 26.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1,013.7억 원(연평균 112.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표 2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제1항)	9.7	18.4	26.0	28.0	29.7	21.0	13.1	6.2	2.9	155.0	17.2
	장애인표준사업장 (제2항)	37.6	78.0	119.2	148.3	180.9	136.6	89.9	44.6	23.6	858.7	95.4
합계		47.3	96.4	145.2	176.3	210.6	157.6	103.0	50.8	26.5	1,013.7	112.6

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특례는 무주택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특례내용: 저축납입액(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414억원까지 증가한 실적이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에는 44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다소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남

[표 2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357	414	396	400	445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액이 향후에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 2024년부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3~2024년 실적에 해당 효과를 반영하여 평균액을 계산
 - 제16차 재정패널조사 자료상 주택청약저축에 종전 한도(240만원) 이상으로 저축한 가구는 300만원까지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납입액 한도 인상으로 세수효과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추계 결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429억원, 2031년 429억원 등 5년간 총 2,143억원(연평균 4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429	-429	-429	-429	-429	-2,143	-429

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저축(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임

[표 31]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연도	2015. 1. 1. 명칭 변경 (2000. 10. 21.)
일몰기한	2025. 12. 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혜택	일몰기한까지 가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의무납입기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9,091억원임
 - 2021년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대상자 축소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 － 2020년 1월 1일부터 직전 3개연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부터 조세지출 실적도 확대

[표 3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액	3,386	2,575	2,554	5,461	9,091

자료: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결과

- 2019~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542만명, 가입계좌는 약 1,008만개 수준이고, 한도금액은 183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은 2019년 128조원에서 2024년 18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남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연령이 2019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실적치 활용

[표 3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개, 조원, 만원)

기준연월	가입자 수 ¹⁾	계좌수 ²⁾	한도금액 ³⁾	가입자당 평균한도
2019. 12.	4,195,017	7,891,578	128	3,048
2020. 12.	4,230,086	7,799,461	130	3,063
2021. 12.	4,346,098	7,912,717	135	3,109
2022. 12.	4,897,897	8,903,875	160	3,260
2023. 12.	5,187,421	9,605,841	172	3,318
2024. 12.	5,416,950	10,085,000	183	3,373

주: 1)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

2)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

3)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치

4) 계좌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

자료: 은행연합회

□ 2024년 이후 연간 시장금리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5.10.) 활용

[표 34]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고채 3년물	3.1	2.4	2.4	2.5	2.6	2.6	2.6
(증감율)	—	(-22.8%)	(0.0%)	(4.2%)	(4.0%)	(0.0%)	(0.0%)

자료: 202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5~2029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30년은 2029년 전망치와 동일하다고 가정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실적치에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조 6,523억원(연평균 9,3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안 제88조의2①)	-7,562	-8,461	-9,450	-10,149	-10,901	-46,523	-9,305

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수선유지용역비)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비는 2026년 7,209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과연수별 ‘호수 × 1호당 평균 수선유지용역비’는 5,131억원 수준
 - 1호당 평균 수선유지용역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자료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추계기간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2025.9.)⁶⁾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2026년 5,332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25년)2.0% (2026년)1.9% (2027년)2.0% (2028년)2.0% (2029년)2.0%
 - 단, 2030년은 2029년과 동일한 물가상승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표 36]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 추정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선유지용역비	5,131	5,231	5,332	5,437	5,545	5,656	5,769

- 전국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의 비율은 2021~2023년 평균 74.0%

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30.

[표 37] 관리주체별 영구임대주택 수 현황

(단위: 만 호, %)

	영구임대주택 수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2021	15.9	5.7	21.6	73.7	26.3
2022	16.4	5.7	22.1	74.1	25.9
2023	16.6	5.8	22.4	74.1	25.9
연평균	-	-	-	74.0	26.0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을 반영해,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는 2026년 7,209억원 수준으로 추정

[표 38]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 추정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선유지용역비	7,209	7,350	7,497	7,647	7,800

- (부가가치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2~2024년 연평균 76.9% 수준

[표 39]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단위: %)

	2022	2023	2024	연평균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기업경영분석)	78.1	77.3	75.3	76.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55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884억원(연평균 5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도별 ‘수선유지용역비 × 부가가치율(76.9%) × 세율(10%)’로 추정
 - 2026~2030년 5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2,154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730억원 감소 예상

[표 40]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 추정: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554	-565	-576	-588	-600	-2,884	-577
- 국세(74.7%)	-414	-422	-431	-439	-448	-2,154	-431
- 지방소비세(25.3%)	-140	-143	-146	-149	-152	-730	-14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신홍철	
	김효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